

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야생조류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 및 예찰 강화 알림

1. 관련 :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-4782(2023.12.23.)호
2. 전북 정읍(동진강)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 대한 검사 결과,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(AI) 항원이 검출되어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조치를 알려 드리니 관계 기관에서는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검출 시·도(전라북도)

- "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(AI SOP)"에 따라 해당 야생조수류 및 그 시료를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방역지역(야생조수류 예찰지역) 설정
 -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(소규모 농가 포함)에 대한 예찰 강화 조치
 -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 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(제23조)에 따른 예찰지역에 해당되는 방역조치 실시(이동제한 조치는 고병원성 확진시 적용*)
 - * 다만, 해당 지자체장이 지형적 여건, 야생조수류 서식실태, 역학적 특성 등 위험도를 감안하여 고병원성 AI 발생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농장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되기 전에 이동제한 가능
 - 방역지역 내 가금 및 가금산물 등에 대해서는 AI 긴급행동지침(SOP)에 의거하여 예찰 실시
 - 방역지역 내 의심축 신고 시 즉시 농식품부 AI 상황실에 보고
-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이 타 시·도와 겹칠 경우 신속히 통보하고 해당 시·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차단방역 실시
- 관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인근 농가 진입로 소독 철저
-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
-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일일 소독·임상검사 및 차단방역 강화

□ 타 시 · 도

- 철새도래지, 저수지, 소하천과 인근 농가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강화
- 철새도래지 주변 낚시객 및 탐방객 등 출입 자제 조치(현수막·입간판 설치 등)
- 가금농장 및 축산 관련 작업장에 대해 임상예찰 및 소독 철저 지도·홍보
 - * 가금농가 대상 철새도래지(이번 AI 검출지역 포함) 방문 자제 등 지도·홍보 실시
-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

□ 농림축산검역본부

- 전국 가금농가에 대해 야생조류 항원 검출내역을 문자(SMS) 홍보 실시
- 국경검역 강화 및 불법 휴대 애완조류 등 가금류에 대한 검역 철저

□ 관계부처 협조사항(환경부,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)

- 야생철새 GPS 수신에 따른 철새 국내 유입 등 이동경로 확인 시 우리 부 및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 즉시 알림
 - 철새도래지별 동절기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 결과 제공 협조
- 「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(환경부)」에 다른 야생동물 감염사례 확인 시 조치사항 추진
- 고병원성 AI 확산에 대비하여 철새서식지 출입관리를 위한 각 지자체(환경부서)의 인력·장비·물자 등 대비 상황 점검

□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

- 초동방역팀 구성 및 현장 초동방역 대응 조치
- 검출지점으로 통하는 출입로 입구에 출입금지판 설치, 외부인·차량 출입제한, 출입로 소독 실시 등 현장 관리
 - 다만, 고병원성 AI 확진 전이라도 띠·안내판·현수막 등으로 사람·차량에 대한 통제사실을 표시하고, 사람·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완료 시 지자체에 유선통보 후 철수 가능
 - * 도심지의 출입통제 등 방역조치 는 현장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실시
- AI 바이러스 검출지역 인근 야생조류 폐사체 예찰 강화
-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 대상으로 전화예찰을 실시하고, 우리 부로 매일 실적 보고

□ 한국농어촌공사

- 소관 저수지에 대한 야생조류 예찰 강화 및 야생조류 폐사체 확인 시 지자체 환경부서와 협조하여 폐사체 발견 즉시 수거 및 검사 의뢰 조치

□ 농협경제지주

-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방역지역 내 가금 사육농가 대상 소독 실시

□ 관련 단체(협회) 및 계열화사업자 등

- 소속 농가와 회원 등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 조치사항 홍보
 - 매일 임상예찰 및 소독 실시토록 홍보를 강화하고, AI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(1588-4060, 9060)하도록 지도 홍보
 - 철새도래지(이번 AI 검출지역 포함) 및 인근 지역 방문 자제 홍보
 -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철저 지도

붙임 : (231223 전북 정읍) 관련 공문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

수신자 AI 방역조치 1-2(중앙부처), AI 방역조치 2-2(시도), AI 방역조치 3(유관기관), AI 방역조치 4(관련협회)

주무관

양재욱

사무관

대결 2023. 12. 23.

조현준

과장

전결

협조자

시행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-9440 (2023. 12. 23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농림축산식품부 (어진동) / <http://www.mafra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2557 팩스번호 044-863-9210 / jeuth@korea.kr / 비공개(5)